

천주교 부산교구

우) 48317 부산 수영구 남천서로 32번길 21 ☎ 051)629-8740 FAX 629-8749 청소년사목국 purunnamu@catb.kr

문서번호 교구 제21-022호

시행일자 2021. 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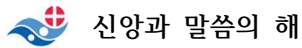
(경유)

수신 제위신부

참조 주일학교·청년 담당수녀
주일학교장, 대표교사

제목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회 (안)>에 대한 제안

선 결			지 시	
접	일자	결 재	
	시간	:		
수			공 람	
처리부서				
담당자				



청소년사목국에서는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회 (안)>을 제안합니다. 2~3월의 지구 회의에서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회 (안)>을 논의 후 의견을 취합하여, 사제평의회(3월 24일)에서 최종결정하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의 선출은 사제평의회 후 지구 회의에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회 (안)> 1부. 끝.

천주교 부산교구 권지호
총대리 권지호 신부

붙임.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회 (안)>

I. 목적

각 지구에 맞는 청소년·청년 사목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구의 주임, 부주임, 보좌 신부님과 지구 내 뛰어난 평신도를 선발하여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회」를 구성하며, 교구 청소년사목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상호 협력함으로써, 교구 사목방침을 지구에서 실행하기 위함이다.

II. 명칭

「○○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회」(지청위)라고 하고, 그 위원장을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지청장)이라 한다.

지구 담당 사제는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의 임명을 받아 지구 내 연합회를 담당하는 사제를 말한다.

III.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 선출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의 선출은 각 지구에서 활동하는 주임급 사제 가운데 지구회의를 통해 선출한 뒤 교구장이 인사발령을 낸다.

IV.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의 임무

1. 각 지구의 청소년·청년 관련 모든 연합회의 지구 담당 사제 임명 및 지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2. 각 지구의 청소년·청년 관련 연합회의 총괄 업무 직권
 - 1) 초등부 교사연합회
 - 2) 중고등부 교사연합회
 - 3) 고등학생 연합회 (유닛)
 - 4) 청년 연합회
 - 5) 부모회
3. 각 지구의 청소년·청년 관련 회의 주재
 - 1) 지구 청소년·청년위원회 회의 (매월)
 - 2) 지구 내 본당 청소년분과장 회의 (분기별)
 - 3) 각 지구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청소년사목국으로 발송하면 청소년사목국에서는 모든 지구의 회의록을 취합한 후 각 지구로 발송함으로써 회의 내용을 공유한다.

- 4)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이 주재하는 청소년·청년 관련 회의의 총무는 지구 총무가 맡는다 (단, 지구 상황에 따라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4.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의 교구 회의는 분기별로 가지며, 사제평의회 전에 실시한다.

V. 예산

1. 지구 내 각 연합회에서는 연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작성한다.
2. 지구회의를 통해 승인된 예산은 지구 내 본당 비율에 따라 책정한다.
3.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은 예산 검토 후 승인 및 실행 감독한다.
4. 지구 담당 사제는 예산에 따른 결산 내역을 연말 지구회의 때 보고한다.

VI. 활동비

1.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의 활동비는 지구에서 직접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지구 담당 사제(초등부/중·고등부/청년/부모회)의 활동비는 각 연합회의 예산 작성 시 포함한다.
 - 1)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의 활동비: 최소 매달 100,000원
 - 2) 지구 담당 사제의 활동비: 각 연합회 회의 시 최소 100,000원
2. 「지구 청소년·청년 전담 사제」의 활동비는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의 활동비를 기본으로 받고, 특별한 계획 실행 시 청소년사목국과 협의하여 지원비를 획득한다.
3.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과 지구 담당 사제의 활동비 내역을 연말 지구회의 때 보고한다.

VII. 임기

1.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과 지구 담당 사제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2.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이나 지구 담당 사제가 인사이동 및 기타의 사유로 공석일 경우, 새로 선출된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이나 지구 담당 사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일을 임기로 한다.
3.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은 당해 11월~12월의 지구회의에서 선출하고, 다음 해 1월 정기 인사발령 이후 지구 담당 사제를 지명한다.
4. 「지구 청소년·청년 위원장」의 교구장 임명은 직능 사제 인사발령에 반영된다.
5. 각 지구 연합회의 총회는 당해 12월~다음 해 1월 안에 시행한다.

VIII. 본당 청소년위원회

1. 본당 청소년분과와 본당 청소년위원회는 다르지 않다. 곧, 청소년분과장과 차장을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본당 청소년분과회의는 매월 개최된다.
3. 본당 청소년분과회의 당연직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1) 본당 청소년분과 담당 사제
 - 2) 본당 청소년분과 담당 수녀
 - 3) 청소년분과장과 차장 그리고 청소년분과를 담당하는 본당 부회장
 - 4) 초등부 교사대표
 - 5) 중고등부 교사대표
 - 6) 청년회 대표
 - 7) 부모회 대표
4. 본당 청소년분과 활성화를 위해 본당 회장이 참여할 것을 권고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사목 대상을 위해 복지분과장의 참여도 권장한다.
5. 본당 청소년분과 회의 결과는 본당 사목협의회에 반영하고, 본당 청소년분과장은 지구 내 본당 청소년분과장 회의 때 알리고 공유한다.